

●국토교통부공고 제2022-1177호

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09일

국토교통부장관

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상위 법령인 행정안전부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의 제명 변경(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) 및 타법 개정(항공법 분법)에 따른 우리 부 소관 법령명 및 관련내용을 개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법령명 변경 :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명)

나. 법령 내 “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” 을 “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” 로 변경하여 상위법 근거 현행화
(안 제1조~제3조, 안 별지 제1호서식~제4호서식, 안 별지 제10호서식)

다. 국토교통부 소관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범위 근거 현행화(안 별표)

타법 개정(항공법이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으로 분법)에 따라 법령 내 항공법을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으로 구분하여 명칭 변경

라. 법령 내 “항공기취급사업체” 를 “항공기취급업체” 로 변경(안 제3조, 안 별표, 안 별지 제4호서식)

관련 법령(항공사업법) 내 용어정의에 의거하여 명칭 변경

3. 의견제출

이 『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』 일부 개정령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비상안전기획관으로 **2022년 12월 19일까지 제출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개정안	수정안	의견

나. 성명(법인.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비상안전기획관(☎ 044-201-3313)
- 전자우편 : controller99@korea.kr
- 팩스 : 044-201-5526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『정책자료-법령정보-입법예고·행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비상안전기획관실(전화 044-201-3313, 팩스 044-201-552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